

1. 개정이유

단기복무 장려금을 지급받은 자가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한 경우 단기복무 장려금을 반납하도록 관련 규정을 신설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가.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대상 확대(안 제5조)

- 1) 임관 전 장려금 반납 대상 중 ‘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’에 대한 해석상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조문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
- 2) ‘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’를 ‘학적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’로 개정

나. 단기복무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회 설치 및 반납액 산정기준 신설(안 제5조의2, 별표 신설)

- 1) 장려금의 반납, 반납유예 또는 면제를 심사하기 위한 심사기구를 각군 본부에 설치함
- 2) 장려금 반납 시 반납해야 하는 반납액 산정기준을 별표에 신설함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

- 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- 2) 입법예고(2024. 4. 4. ~ 5. 14.) 예정
- 3) 행정규제 : 규제심사 비대상임을 확인

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개정령안

군 장려금 지급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5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군 장려금을 반납하게”를 “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”으로 하며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각 호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반납 대상자 본인 및 보증인으로 하여금 반납 통지일부터 6개월 이내에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, 이를 반납하지 아니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반납을 면제한다.

제5조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1호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 제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, 같은 조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3호 및 제1항(종전의 제목 외의 부분)제4호를 각각 삭제하며,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1. 임관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학적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

나.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

다.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라.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
2.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
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가.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(위법행위나 고의
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함)

나.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

다. 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

- ② 제1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 장
려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
한다.
- ③ 제2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통지를 받고 반납을 연기하거나 면제
받고자 하는 사람은 반납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에
따른 군 장려금 반납 연기(면제) 신청서를 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
하여야 하며, 반납 연기를 신청하는 경우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터
1년 이내로 한다.
- ④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연기(면제) 신청을
받은 때에는 제5조의2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회에서 이를 심
사하고,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신청일부터 3개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.
제5조의2 및 제5조의3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- 제5조의2(군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회) ① 제5조에 따른 군 장려금의 반
납, 반납연기 또는 면제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각군 본부에

군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 정한다.

제5조의3(재심사 청구) ① 제5조제4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다.

② 재심사에 대해서는 「군 가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정」 제15조의3을 준용한다. 이 경우 “군 가산복무 지원금”은 “군 장려금”으로, “군 가산복무 지원금 대상자”는 “군 장려금 지급 대상자”로 본다.

별표를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장려금 반납에 관한 적용례) 제5조제1항제2호는 이 규칙 시행 이후 장려금을 지급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.

[별표 1]

반납액 산정기준

1. 반납액은 다음 계산식에 따라 산정한다.

$$\text{반납액(원)} = \text{지급된 장려금} \times \frac{\text{의무복무개월수} - \text{복무개월수}}{\text{의무복무개월수}}$$

2. 제1호의 의무복무개월수 및 복무개월수를 계산할 때에는 15일 이상은 1개월로 계산하고, 15일 미만은 산입하지 않는다.

군 장려금 반납 연기(면제) 신청서

접수일		처리기간		3개월	
신청인	성명				
	주소				
신청내용	학교 및 전공학과				
	지급받은 비용 명세			연기기간	
	연기(면제) 사유 (일부 또는 전부)				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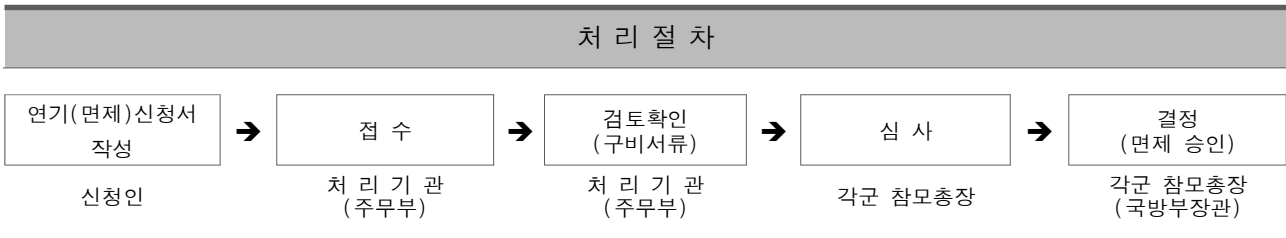
「군 장려금 지급 규칙」 제5조제3항에 따라 군 장려금 반납 연기(면제) 신청서를 제출하니 심사하여 일부 또는 전부를 연기(면제)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년 월 일

연기(면제) 신청인

(서명 또는 인)

()군 참모총장 귀하

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5조(군 장려금의 반납) 각군 참모총장은 군 장려금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<u>군 장려금을 반납하게</u> 하여야 한다. <단서 신설>	제5조(군 장려금의 반납) ① ----- ----- -----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반납하도록 ----- ----- 반납 대상자 <u>본인</u> 또는 <u>보증인으로</u> 하여금 반납 통지일 부터 6개월 이내에 반납하게 할 수 있으며, 이를 반납하지 아니 하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징수할 수 있다. 다만, 군 장려금을 지급받은 사람이 사망한 때에는 반납을 면제한다.
1. <u>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</u>	1. <u>임관 전에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 가. <u>학적에서 퇴학 또는 제적된 경우</u> 나. <u>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</u> 다. <u>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</u> 라. <u>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</u>

2. 본인이 장교 지원을 포기한 경우

3. 법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4. 법 제62조제1항에 따라 군 가산복무 지원금을 지급받은 경우

<신 설>

<신 설>

급받은 경우

2. 임관 후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법 제7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다음 각 목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

가. 법 제3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(위법행위나 고의로 심신장애를 초래한 경우에 한함)

나. 법 제37조제1항제4호에 해당하여 전역된 경우

다. 법 제40조제1항제3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여 제적된 경우

<삭 제>

<삭 제>

② 제1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통지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 통지서를 본인 또는 그의 친권자 및 보험회사에게 보내야 한다.

③ 제2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

<신 설>

<신 설>

납 통지를 받고 반납을 연기하
거나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
반납 통지일부터 1개월 이내에
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군 장려
금 반납 연기(면제) 신청서를
소속 군 참모총장에게 제출하여
야 하며, 반납 연기를 신청하는
경우 연기기간은 반납 통지일부
터 1년 이내로 한다.

④ 각군 참모총장은 제3항에 따
른 군 장려금 반납 연기(면제)
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5조의2에
따른 군 장려금 반납 심사위원
회에서 이를 심사하고, 그 결과
를 신청인에게 신청일부터 3개
월 이내에 알려야 한다.

제5조의2(군 장려금 반납 심사위
원회) ① 제5조에 따른 군 장려
금의 반납, 반납연기 또는 면제
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
여 각군 본부에 군 장려금 반납
심사위원회를 둔다.

② 제1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
납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
필요한 사항은 각군 참모총장이
정한다.

<신 설>

제5조의3(재심사 청구) ① 제5조

제4항에 따른 군 장려금 반납
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이의가 있
는 군 장려금 반납대상자는 결
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1개월 이
내에 국방부장관에게 재심사를
청구할 수 있다.

② 재심사에 대해서는 「군 가
산복무 지원금 지급 대상자 규
정」 제15조의3을 준용한다. 이
경우 “군 가산복무 지원금”은
“군 장려금”으로, “군 가산복무
지원금 대상자”는 “군 장려금
지급 대상자”로 본다.